

# 예산총칙

200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32,714,473	6,981,434
일반회계	171,929,150	5,157,875
일반회계	171,929,150	5,157,875
기타특별회계	60,785,323	1,823,5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88,965	119,66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83,894	14,517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64,729	25,942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3,546,776	706,40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985,594	269,56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891,265	356,738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1,975,000	59,25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8,476,900	254,307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502,000	15,060
기반시설특별회계	70,200	2,10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05,52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